

[신청자격]**Q) 연수생은 몇 명 이상 선발해야 하나요?**

- ▶ 기관당 연수생 5인 이상 선발하여야 합니다.

Q) 연수생 자격에 제한이 있나요?

- ▶ 의과학자 진로에 관심이 있는 의과대학 학부생 또는 학위과정에 참여 중인 대학원생 이어야 합니다.
- ▶ 의과대학 학생 또는 MD 면허 미소지자인 경우에도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기관 내부적으로 연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.

[연수기관]**Q) 해외 연수기관의 기준이 있나요?**

- ▶ 별도의 필수 기준은 없으나,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한 석학을 보유한 연구기관 협력을 권장합니다. 또한, 연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.
- ▶ 연수기관에 연수생이 일괄 다녀오거나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.

Q) 해외 연수기관이 반드시 확정(확약)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나요?

- ▶ 신청 시 확정이 필수는 아니나, 기 구축된 네트워크 또는 신규 협력을 통해 연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. 단, 평가 시 연수기관 확보 계획 및 우수성을 중점 평가하므로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연수생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찾고 기관이 연수경비만 지원하는 형태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.

Q) 해외 연수기관을 추후 변경할 수 있나요?

- ▶ 신청 시 제시한 해외 연수기관 변경 등 사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

[사후관리 의무]**Q) 연수 프로그램 종료 후 어떤 사후 관리 의무가 있나요?**

- ▶ 연수 종료 후 3년간 반기별로 연수생의 진로 경로 및 연구활동(또는 성과)에 대한 점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또한 주관기관의 현장 점검 및 자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.
- ▶ 연수생은 매년 12월 개최하는 성과교류회에서 모두 연수경험 발표를 하여야 합니다.
- ▶ 연수생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,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[예산 편성]

Q) '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' 대학원생 지원비로 추가 여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?

- ▶ 불가합니다. 연수기간 중 타 국가지원사업의 중복 여비 집행은 불가하므로, 사전 예산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연수기간 중 연구활동 목적의 수용비 등은 사업계획에 적합한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.

Q) 연수생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나요?

- ▶ 불가합니다. 연수생 인건비는 계상할 수 없습니다.
- ▶ 연수생에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프로그램 비용, 항공료, 숙박비, 소정의 체재비만 가능합니다.

Q) 연수생 국외여비 계상 시 제한이 있나요?

- ▶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항공권, 숙박비, 여행자보험비 및 비자 발급 비용은 계상 가능하며, 실비 정산입니다.(정액 지급 불가, 기관에서 해당 비용 직접 집행하며, 학생에게 현금 지급 불가)
 - 기관 자체 여비 기준 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야 합니다.
 - 연수생의 체재비(여비 기준의 일비와 식비)는 전체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일비+식비의 합계액 기준 50% 이내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(실비 정산 해당 없음. 기준 범위 내에서 정액으로 일괄 지급 가능, 연수완료 후 사후 계좌이체 지급)
 - 연수생 1인당 지원 금액은 총 2천만원 이내입니다.